



본인확인서(법인/단체)

한국카카오은행(주) 귀중

본 확인서는 상호주의에 따른 정기적인 금융정보의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31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7 조에 의거한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에 의하여 작성이 요구되는 필수서식입니다.

가. 고객정보

단체명	한글	영문	전화번호	
설립지국	한글	영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본점 주소)	영문			

나. 조세목적상 거주지국 (본사 설립지국 등)

1	국가명(영문)		납세자번호		☐ 미발급 국가 ☐ 미요구 국가 ☐ 미취득
2	국가명(영문)		납세자번호		☐ 미발급 국가 ☐ 미요구 국가 ☐ 미취득
3	국가명(영문)		납세자번호		☐ 미발급 국가 ☐ 미요구 국가 ☐ 미취득
미기재 사유가 미취득인 경우 사유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다. 확인사항

■ 아래 ①~④ 질문에 순차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어 설명 및 상세한 작성방법은 [작성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①	귀 단체는 조세목적상 미국단체 또는 미국기관 등에 해당하십니까? [예]를 선택한 경우 뒷면 ⑤항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예	☐ 아니오
②	귀 단체는 예금기관, 수탁기관, 투자단체 또는 특정보험회사(이하 “금융회사”)에 해당하십니까? [예]를 선택한 경우, 뒷면 ⑥항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귀 단체는 다음의 능동적 비금융단체 중 하나에 해당하십니까? [예]를 선택한 경우 다음 중 해당하는 유형에 체크(√)하고 질문 ④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 예	☐ 아니오
③	☐ 능동적 일반단체^{주 1)} ☐ 주권상장법인 ☐ 주권상장법인의 특수관계단체 ☐ 미국령 소재 단체 ☐ 지주회사/재무센터/전속금융회사 ☐ 정부기관/국제기구/중앙은행 ☐ 신생 단체 ☐ 청산 또는 조직변경 중인 비금융단체 ☐ 비금융그룹 ☐ 미국 연방세법 제 501© 단체 ☐ 공익적 단체 주 1) 능동적 일반단체: 직전 연도 총 수입의 50% 미만인 수동적 수입^{주 2)}이고, 직전 연도의 보유 자산 중 50% 미만인 수동적 수입을 창출하거나 수동적 수입의 창출을 위하여 보유되는 비금융단체 주 2) 수동적 수입: 이자, 배당, 임대료, 수동적자산 매각이익 등에서 발생한 수입(적극적인 영업활동에 의한 임대료는 제외)	☐ 예	☐ 아니오

⑥	금융회사에 해당하면 다음 항목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지주회사 및 여신전문 금융회사(신용카드회사, 캐피탈 등)는 금융회사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A	보고대상 관할권이 아닌 국가 또는 지역에 소재하며, 다른 금융회사가 지분을 소유하는 투자단체입니까? [예]를 선택한 경우 ⑦항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예 ☐ 아니오
	B	국내 금융회사 또는 FATCA 협력관할권 금융회사입니까?	☐ 예 ☐ 아니오
	C	FATCA에 참여하지 않거나 미국국세청(IRS)으로부터 비참여 금융회사로 분류되었습니까?	☐ 예 ☐ 아니오



작성지침

가.고객인적사항

PART 가. 에서는 귀사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체명, 전화번호, 설립지국,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본점주소)를 기재해 주십시오.

나. 조세목적상 거주지와 납세자번호

PART 나. 에서는 귀사의 조세목적상 거주지국과 납세자번호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사 설립지국이 해외인 경우 등 해외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조세목적상 거주지국 정보 및 납세자번호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사는 복수의 조세목적상 거주지와 납세자번호를 보유하고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보고대상관할권에 각각 금융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다. 고객확인사항

PART 다. 에서는 귀사의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①미국단체	“미국단체”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1. 미국 내에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 2. 미국연방법 또는 주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 가. 미국에 소재하는 법원이 신탁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명령 또는 재판을 할 실질적 권한을 가질 것 나. 한 명 이상의 미국인이 해당 신탁의 의사결정을 할 실질적 권한을 가질 것		
②금융회사	예금기관		"예금기관"이란 [은행법] 제 27 조제 2 항 각 호에 따른 은행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운영하는 단체를 말한다.
	수탁기관		"수탁기관"이란 타인의 계좌를 위하여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행위가 주요한 영업이며 금융자산 보유 업무와 이에 부수하는 금융서비스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운영함에 따른 소득이 총소득의 100분의 20 이상(산정일 이전 종료되는 회계연도 및 직전 2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단체의 존속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는 단체의 존속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소득에 대한 산정기준은 이와 같다)인 단체를 말한다.
	투자단체		"투자단체"란 타인을 위하여 또는 타인을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요한 영업으로 운영(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운영함에 따른 소득이 총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는 단체 및 그 단체를 포함한 금융회사가 주요한 영업을 위해 관리하는 기구로서 그 소득이 주로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 재투자 또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수표, 어음, 양도성 예금증서, 외국환, 환전, 유가증권,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 2. 타인으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이하 "금전 등"이라 한다)을 관리 3. 그 밖에 타인을 대신하여 금전 등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 취득·처분 등의 방법으로 운용
	특정 보험회사		"특정보험회사"란 현금가치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을 발행하거나 현금가치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과 관련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단체를 말한다.
③능동적 비금융단체	보고대상 제외단체	주권상장법인 주권상장법인의 특수관계 단체	주식이 하나 이상 개설된 증권시장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회사 및 동 회사의 특수관계단체에 해당하는 모든 회사를 말한다.
		정부기관 국제기구 중앙은행	정부기관, 국제기구, 중앙은행(이하 정부기관 등이라 한다) 또는 정부기관 등이 완전히 소유한 단체인 경우를 말한다.

	능동적 비금융단체	능동적 일반단체	직전 연도 또는 그 외의 적절한 보고기간 동안 총 수입의 100 분의 50 미만이 수동적 수입(이자, 배당, 유사 이자수입, 임대료·사용료, 연금, 수동적 자산의 매각·교환에서 발생한 이익, 상품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및 현금가치보험계약으로부터 수취한 금액 등을 말하며, 이하 같다)이고, 직전 연도 또는 그 외의 적절한 보고기간 동안 비금융단체가 보유한 자산의 100 분의 50 미만이 수동적 수입을 창출하거나 수동적 수입의 창출을 위하여 보유된 경우를 말한다.
		미국령 소재 단체	비금융단체가 미국령에 설립되고 수취인의 모든 소유자가 그 미국령의 진정한 거주자인 경우를 말한다.
		비금융지주회사	비금융단체의 모든 활동이 실질적으로 금융업이 아닌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하거나 그 자회사에 대하여 자금 및 용역을 제공하는 것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비금융단체가 투자펀드(사모펀드, 벤처캐피탈펀드, 차입매수펀드, 회사를 인수하거나 회사에 자금을 제공하고 그 회사의 지분을 투자목적의 자산으로 보유하는 것이 사업목적인 투자기구 등을 포함한다)로서 기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생단체	비금융단체가 아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으며 이전에도 사업을 영위한 바 없으나, 금융업이외의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자산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비금융단체의 최초설립일로부터 24 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청산 또는 조직변경 중인 비금융단체	지난 5 년간 금융회사가 아니었던 비금융단체가 자산을 청산하는 중이거나 금융업 이외의 사업의 운영을 계속하거나 재개하려는 의도로 사업재편 중인 경우를 말한다.
		비금융그룹	비금융단체가 주로 금융회사가 아닌 특수관계단체와(특수관계단체를 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자금제공 및 위험회피목적 거래를 하고, 특수관계단체가 아닌 단체에게는 자금 또는 위험회피목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특수관계단체는 금융업 이외의 사업을 주로 영위하여야 한다.
		미국 연방세법 제 501(C)단체	비금융단체가 미국 세법상 예외적 비금융외국단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공익적 단체	비금융단체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단체가 오직 종교, 자선, 과학, 예술, 문화, 체육 또는 교육 목적을 위해 거주지 관할권 내에서 설립되고 운영되거나 거주지 관할권 내에서 설립되고 운영되며 전문가조직, 사업자 단체, 상공회의소, 노동단체, 농업 또는 원예단체, 시민단체 또는 오직 사회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에 해당할 것 2. 거주지 관할권에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을 것 3. 수입이나 자산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수익권을 가진 주주 또는 구성원이 없을 것 4. 거주지 관할권의 관련 법령 또는 비금융단체의 설립 관련 문서가 해당 비금융단체의 수입이나 자산이 개인 또는 비자선단체에게 분배되거나 개인 또는 비자선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 다만, 비금융단체의 자선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합리적인 대가의 지급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및 비금융단체가 구매한 재산의 공정시장 가치에 상응하는 지급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외한다. 5. 거주지 관할권의 관련 법령 또는 비금융단체의 설립 관련 문서가 비금융단체의 청산 또는 해산 시 비금융단체의 모든 자산이 정부기관 또는 기타 비영리단체에게 분배되거나 거주지 관할권의 정부 또는 그 정부의 정치적 하부조직에 귀속될 것을 요구할 것
④ 수동적 비금융단체	수동적 비금융단체		수동적 비금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능동적 비금융단체가 아닌 모든 비금융단체 2. 다른 금융회사에 의해 전문적으로 관리되는 투자단체로서 보고대상 관할권 금융회사가 아닌 단체 3. 미국 재무부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 해외조합 또는 원천징수 해외신탁이 아닌 모든 비금융단체 (보고대상 관할권이 미국인 경우에 한한다.)

마. 특정미국인(보고제외 미국단체)

⑤ FATCA 보고제외 미국단체	주권상장법인 주권상장법인의 특수관계단체	주식이 하나 이상의 증권시장에서 정기적으로 거래되는 회사 및 동일한 확장계열사그룹(미국 세법에 따른다)의 계열사인 모든 회사를 말한다.
	미국 정부기관 등	미국, 미국정부소유기관 또는 미국정부대행기관
	미국령 지역 관할정부(기관) 등	미국 주, 미국령, 미국 주 또는 미국령의 정치적 하부조직, 미국 주 및 미국령 또는 그의 정치적 하부조직의 소유기관 또는 대행기관
	미국 세법에 따른 면세기구 또는 퇴직연금	미국 세법 제 501(a)조에 정의된 면세기관 또는 제 7701(a)(37)조에 정의된 개인퇴직펀드를 말한다.
	미국 소재 은행	미국 세법에 정의된 미국 소재 은행(제 581 조)을 말한다.
	미국 세법에 따른 부동산 투자 신탁	미국 세법에 정의된 미국 소재 부동산투자신탁(제 856 조)을 말한다.
	미국 소재 특정 규제 대상 투자 회사 등	미국 세법에 정의된 규제대상 투자회사(제 851 조) 또는 증권거래위원회 등록 법인(1940 년 투자회사법 15 U.S.C.80a-64 조)을 말한다.
	미국소재 공통투자신탁펀드	미국 세법에 정의된 공통투자신탁펀드(제 584(a)조)를 말한다.
	미국 소재 특정 면세 신탁 등	미국 세법에 정의된 면세신탁(664(c)조, 4947(a)(1)조)을 말한다.
	미국 소재 특정 금융상품 딜러	유가증권, 상품, 파생금융상품(명목원금계약, 선물, 선도, 옵션 포함)의 거래업자로서 미국연방법 또는 주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를 말한다.
	미국 소재 특정 중개인	미국 세법에 정의된 브로커(6045(c)조)를 말한다.

바. 금융회사

⑥ E.공통보고기준(CRS) 보고제외 금융회사	공통보고기준(CRS) 보고제외 금융회사	
	다수참여 퇴직펀드	"다수참여 퇴직펀드"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펀드를 말한다. 1.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펀드일 것 2.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하나 이상의 사용자의 현직 또는 전직 근로자인 수익자(근로자가 지정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퇴직 보험금, 장애 보험금 또는 사망 보험금 등이 결합된 보험금을 제공할 것 3. 펀드 자산의 100 분의 5 를 초과하는 자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단독 수익자를 보유하지 아니할 것 4. 펀드의 수익자에 관련된 정보를 관련 권한 있는 당국에 제공할 것 5. 다음 각각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것 가. 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받을 것 나. 사용자가 총 분담금의 100 분의 50 이상을 기여할 것 다. 퇴직, 장애 또는 사망과 관련된 특정 사건(이하 이 조에서 "특정 사건"이라 한다)이 발생한 때에만 분배 또는 인출이 가능할 것 라. 특정 사건이 발생하기 전 이루어진 분배 또는 인출에는 불이익이 부과될 것 마. 근로자의 분담금이 근로소득에 따라 제한되거나 연간 미화 5 만달러 이하일 것
	소수참여 퇴직펀드	"소수참여 퇴직펀드"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펀드를 말한다. 1.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펀드일 것 2.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하나 이상의 사용자의 현직 또는 전직 근로자인 수익자(근로자가 지정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퇴직 보험금, 장애 보험금 또는 사망 보험금 등이 결합된 보험금을 제공할 것 3. 참가자가 50 인 미만일 것 4. 투자기구 또는 수동적 비금융법단체가 아닌 하나 이상의 사용자만 기여할 것 5. 근로자 및 사용자의 분담금이 근로소득 및 보수에 따라 각각 제한되는 펀드 6. 펀드 자산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는 자산에 대한 권리를 거주자가 아닌 참가자가 보유하지 아니할 것 7. 펀드의 수익자에 관련된 정보를 관련 권한 있는 당국에 제공할 것

	정부단체 등의 연금펀드	"소수참여 퇴직펀드"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펀드를 말한다. 1.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펀드일 것 2.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하나 이상의 사용자의 현직 또는 전직 근로자인 수익자(근로자가 지정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퇴직 보험금, 장애 보험금 또는 사망 보험금 등이 결합된 보험금을 제공할 것 3. 참가자가 50 인 미만일 것 4. 투자기구 또는 수동적 비금융단체가 아닌 하나 이상의 사용자만 기여할 것 5. 근로자 및 사용자의 부담금이 근로소득 및 보수에 따라 각각 제한되는 펀드 6. 펀드 자산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는 자산에 대한 권리를 거주자가 아닌 참가자가 보유하지 아니할 것 7. 펀드의 수익자에 관련된 정보를 관련 권한 있는 당국에 제공할 것
	정부단체 등의 연금펀드	"정부단체 등의 연금펀드"란 정부단체 등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퇴직 보험금, 장애 보험금 또는 사망 보험금 등을 제공하기 위한 펀드를 말한다. 1. 정부단체 등의 현직 또는 전직 근로자인 수익자 또는 참가자(근로자가 지정한 자를 포함한다) 2. 제 1 호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정부단체 등을 위하여 인적 용역을 제공한 수익자 또는 참가자
	면제 집합투자기구	"면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기구로 규제되는 투자단체로서, 모든 지분이 보고대상 인이 아닌 개인이나 단체에 의하여 또는 보고대상 인이 아닌 개인이나 단체를 통하여 보유되는 경우를 말하며, 보고대상 인이 실질적 지배자인 수동적 비금융단체는 제외한다.
	수탁자 자료제출형 신탁	"수탁자 자료 제출형 신탁"이란 신탁의 수탁자가 금융회사이고 대한민국 또는 다른 보고대상 관할권에 신탁의 모든 보고 금융계좌의 정보를 보고하는 경우의 신탁을 말한다. 다만, 보고대상 관할권이 미국인 경우에는 신탁의 수탁자가 보고 금융회사, 미국의 금융회사 또는 FATCA 참여금융회사이고 모든 보고 금융계좌의 정보를 보고하는 신탁을 말한다.
	금융회사 자료 제출형 투자단체	"금융회사 자료 제출형 투자단체"란 고객의 명의로 다른 금융회사(보고대상 관할권이 미국인 경우 FATCA 비참여 금융회사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에 예치된 자금의 투자, 운용 또는 관리를 목적으로 고객을 위하여 또는 고객을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며, 직접 유지 및 관리하는 고객계좌가 없는 투자단체를 말한다. 1. 투자자문 제공 2. 자금의 운용(그 지분이 다른 금융회사를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을 포함한다)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을 말한다.
	비거주자 미거래 국내 금융회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회사를 "비거주자 미거래 국내 금융회사"라 말한다. 1. 국내법에 따라 금융회사로 인가를 받고 규제될 것 2. 외국환거래법 에 따른 외국환업무 취급범위에 비거주자와 금융계좌의 거래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 3. 금융회사가 자금세탁방지 절차를 준수할 것 4. 금융회사가 외국에 설치한 해외법인 또는 지점이 없을 것 5. 조세의 원천징수 목적상 매년 금융계좌와 관련한 소득세를 징수하고 국세청에 보고 및 납부할 것
	기획재정부장관 인정 금융회사	타국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는 대한민국 거주자만을 대상으로 거래를 하는 금융회사로서 세금 회피의 수단으로 사용될 위험이 낮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⑥F. FATCA 보고제외 금융회사	FATCA 보고제외 금융회사	
	다수참여 퇴직펀드	CRS 보고의무 면제 금융회사와 동일
	소수참여 퇴직펀드	CRS 보고의무 면제 금융회사와 동일
	정부단체 등의 연금펀드	CRS 보고의무 면제 금융회사와 동일
	적격퇴직 연기금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적격 퇴직연기금 1. 거주자로서 미국원천 발생 소득에 대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에 따른 혜택을 받을 자격을 가질 것 2. 주로 연금 또는 퇴직급여를 관리·제공하기 위해 운영될 것
	적용면제 실질 소유자 소유 투자	적용면제 실질 소유자가 완전히 소유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투자단체

	단체	1. 투자단체라는 이유만으로 금융회사일 것 2. 적용면제 실질 소유자만 직접 단체의 자본지분을 소유할 것 3. 예금기관(투자단체에 대출을 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적용면제 실질 소유자만 직접 단체의 채무지분을 소유할 것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CRS 보고의무 면제 금융회사와 동일
	지역고객 기반 금융회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회사를 "지역고객 기반 금융회사"라 한다. 1. 관련법에 따라 금융회사로 인가받고 규제될 것 2. 대한민국이 아닌 지역에 고정된 영업소(대중에 광고되지 않고 행정적인 지원 기능만을 수행하는 장소는 제외한다)를 가지지 아니할 것 3. 대한민국이 아닌 지역에서 고객 또는 계좌보유자를 유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 또는 계좌보유자를 유치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웹사이트를 운영하되, 웹사이트에서 「소득세법」 제 1 조의 2 제 1 항제 2 호에 따른 비거주자에게 금융계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특별히 표시하거나 달리 미국 고객 또는 계좌보유자를 목표로 유치하지 않는 경우 나. 주로 대한민국 내에서 주로 배포되거나 방영되지만 부수적으로 타국에서 배포되거나 방영되는 인쇄매체,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에 광고를 하되, 광고에서 「소득세법」 제 1 조의 2 제 1 항제 2 호에 따른 비거주자에게 금융계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특별히 표시하거나 달리 미국 고객 또는 미국 계좌보유자를 목표로 유치하지 않는 경우 4. 「소득세법」 제 1 조의 2 제 1 항제 1 호에 따른 거주자(이하 "대한민국 거주자"라 한다)가 보유하는 금융계좌에 대한 정보보고 또는 원천징수 목적 또는 자금세탁방지 절차에 따른 실사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한민국 거주자인 계좌보유자를 확인하도록 요구될 것 5. 유지하는 금융계좌 가치의 100 분의 98 이상을 대한민국 거주자(단체를 포함한다)가 보유할 것 6. 금융회사는 늦어도 2014 년 7 월 1 일부터 FATCA 비참여금융회사에 금융계좌를 제공하는 것을 차단하고 다음 각각의 자를 위하여 금융계좌를 개설·유지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할 것 가. 대한민국 거주자가 아닌 특정미국인(계좌개설시에는 대한민국 거주자였으나 그 이후에는 대한민국 거주자가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나. 실질적 지배자가 대한민국 거주자가 아닌 미국 거주자이거나 미국 시민권자인 수동적 비금융단체 7. 6 호의 정책 및 절차는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금융계좌를 소유한다고 확인될 경우, 그 계좌를 보고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보고(미국 국세청 웹사이트의 관련 등록요건을 따르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정하고 있을 것 가. 대한민국 거주자가 아닌 특정미국인 나. 실질적 지배자가 대한민국 거주자가 아닌 미국 거주자 또는 미국 시민권자인 수동적 비금융단체 8. 대한민국 거주자가 아닌 개인이 보유하는 기존계좌 또는 단체가 보유하는 기존계좌와 관련하여, 금융회사는 보고 금융계좌 또는 FATCA 비참여금융회사가 보유한 금융계좌를 확인하기위하여 실사절차에 따라 기존계좌를 검토하여야 하며, 그 계좌를 보고 금융회사와 동일하 보고(미국 국세청 웹사이트의 관련 등록요건을 따르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정하고 있을 것 9. 이행규정 제 21 조제 6 항부터 제 8 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퇴직펀드인 특수관계단체를 제외하고, 금융회사인 특수관계단체는 각각 대한민국에서 설립되어야 하고 제 1 호 각 목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할 것 10. 금융계좌 개설 및 유지에 있어 특정미국인이며 대한민국 거주자인 개인을 차별하는 정책이나 관행을 가지지 아니할 것
	지역은행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회사를 "지역은행"이라 한다. 1. 다음 각각의 금융회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주요한 영업이 특수관계가 없는 소매고객에 대한 예금 수신 또는 대출인 은행 나. 주요한 영업이 특수관계가 없는 소매고객에 대한 예금 수신 또는 대출인 상호저축은행 다. 주요한 영업이 특수관계가 없는 소매고객 또는 조합원에 대한 예금 수신 또는 대출이고 총 자본 중 100 분의 5를 초과하는 지분을 가지는 조합원이 없는 협동조합 2. 금융회사가 지역고객 기반 금융회사의 2 호 3 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웹사이트를 통해 최초 금융계좌가 개설되지 아니할 것 4. 대차대조표상 자산이 미화 1 억 7 천 500 만 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5. 특수관계단체의 연결대차대조표상 자산이 미화 5 억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6. 각 특수관계단체는 대한민국에서 설립 또는 조직되어야 하며, 금융회사인 특수관계단체(이행규정 제 21 조제 6 항부터 제 7 항까지와 동조제 8 항제 2 호의 규정에 따른 퇴직펀드나 제 3 호에 따른 소액계좌 금융회사를 제외한다)는 각각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소액계좌 금융회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회사를 "소액계좌 금융회사"라 한다.

		1. 투자단체가 아닐 것 2. 금융회사 또는 특수관계단체에 의하여 유지되는 금융계좌 중 계좌잔액이 미화 5 만 달러를 초과하는 계좌가 없을 것 3. 금융회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이 미화 5 천만 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금융회사와 특수관계단체의 연결대차대조표상 자산이 미화 5 천만 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수탁자 자료 제출형신탁	CRS 보고의무 면제 금융회사와 동일
	국내 설립 면제 집합투자기구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로서 모든 지분(미화 5 만 달러를 초과하는 채무지분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의하여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통하여 보유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적용면제 실질 소유자 2. 능동적 비금융단체 3. 특정미국인이 아닌 미국인 4. FATCA 비참여금융회사가 아닌 금융회사
	금융회사 자료 제출형 투자단체	CRS 보고의무 면제 금융회사와 동일
	피후원 투자기구	적격대리 금융회사, 원천징수 비미국조합, 원천징수 비미국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다른 단체가 다음 각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후원기관(이하 "후원기관")이 되기로 동의한 투자단체(투자단체라는 이유만으로 금융회사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피후원 투자기구"이라 한다. 1. 미국 국세청 웹사이트의 관련 등록요건의 이행을 위하여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행위할 권한을 부여받을 것 2. 미국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후원기관으로 등록할 것 3. 금융회사 관련 보고 금융계좌를 확인할 경우 2015 년 12 월 31 일 또는 보고 금융계좌가 처음으로 확인된 날로부터 90 일이 되는 날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 이전에 금융회사를 등록할 것 4.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금융회사가 보고 금융회사라면 이행할 모든 실사, 보고의무 등을 이행하는데 동의할 것 5.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이행하는 모든 보고에 금융회사를 표시하고 금융회사의 식별번호를 포함할 것 6. 후원자로서의 지위를 취소하지 아니할 것
	피지배 외국회사	적격대리 금융회사, 원천징수 비미국조합, 원천징수 비미국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피지배 단체를 "피지배 외국회사"라 한다. 1. 미국의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후원기관으로 되기로 동의한 경우 그 미국의 금융회사에 의해 완전히 소유되는 금융회사일 것 2. 후원기관이 금융회사의 모든 계좌보유자와 수취인을 확인하고, 금융회사가 유지하는 모든 계좌고객정보(고객 식별번호, 고객서류, 계좌잔액, 계좌보유자 또는 수취인에 대한 지급액을 포함한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공통의 전산계좌시스템을 후원기관과 공유할 것
	피후원 폐쇄형 투자기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회사를 "피후원 폐쇄형 투자기구"이라 한다. 1. 적격대리 금융회사, 원천징수 비미국조합, 원천징수 비미국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투자단체(투자단체라는 이유만으로 금융회사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후원기관이 미국의 금융회사, 정부간 FATCA 협정에 따른 보고 금융회사 또는 FATCA 참여금융회사로서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행위할 권한을 부여받고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금융회사가 보고 금융회사라면 이행할 모든 실사, 보고의무 등을 이행하는데 동의할 것 3. 금융회사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단체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할 것 4. 20 명 이하의 개인이 금융회사의 채무지분 및 자본지분을 소유할 것. 다만,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지분 또는 자본지분은 제외한다. 1) FATCA 참여금융회사 및 이행간주 금융회사가 보유하는 채무지분 2) 제 6 호에 해당하는 단체가 금융회사의 자본지분을 전부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자본지분 마. 후원기관은 다음 각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1) 미국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후원기관으로 등록할 것 2)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금융회사가 보고 금융회사라면 이행할 모든 실사, 보고의무 등을 이행하는데 동의하고 금융회사와 관련하여 수집한 문서를 6 년간 보관할 것 3)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이행하는 모든 보고에 금융회사를 표시할 것 4) 후원자로서의 지위를 취소하지 아니할 것
	한시적채권발행투자기구(2017.1.1 까지만 적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회사는 미국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의 목적상 이행간주 금융회사에 해당한다. 다만, 금융회사가 적격대리 금융회사, 원천징수 비미국조합 또는 원천징수 비미국신탁인 경우 미국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투자단체라는 이유만으로 금융회사에 해당할 것 2. 금융회사가 발행한 지분은 유통시장에서 투자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하고 금융회사에 의하여 상환되거나 양도 될 것(금융회사가 2012년 12월 31일 이후에는 무기명식 지분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2017년 1월 1일 이전에 그러한 모든 지분을 상환하거나 유통을 정지시키기 위한 방침 및 절차를 수립할 것) 3. 금융회사가 직접 발행하지 아니한 지분은 FATCA 참여금융회사, 미국 국세청 웹사이트의 관련 등록요건을 따르는 이행간주 금융회사, 지역은행 등에서만 판매할 것 4. 금융회사가 2014년 6월 30일 또는 이행간주 금융회사로 등록된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까지 특정미국인, FATCA 비참여금융회사 또는 하나 이상의 실질적 지배자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거주자(대한민국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인 수동적 비금융단체에 대한 해당 금융회사의 채무지분 또는 자본지분의 판매 또는 양도가 금지되도록 할 것 5. 금융회사는 2014년 6월 30일 또는 이행간주 금융회사로 등록된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까지 제 3호에 따른 판매사의 지위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회사에 통지하도록 하고, 그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판매사와의 판매계약을 종료시키고 판매사를 통해 발행된 모든 채무지분 및 자본지분을 판매사의 지위에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환, 전환 또는 양도할 것이라는 점을 미국 국세청에 증명할 것 6. 금융회사가 보고 금융계좌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존계좌를 실사할 것. 다만, 판매계약 및 투자설명서에 미국 단체와 미국 거주 개인에 대한 지분의 발행 및 판매가 명백히 금지되어 있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금융회사는 늦어도 2014년 7월 1일부터 FATCA 비참여금융회사에 금융계좌를 제공하는 것을 차단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금융계좌를 개설·유지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할 것 가. 대한민국 거주자가 아닌 특정미국인(계좌개설시에는 대한민국 거주자였으나 그 이후에는 대한민국 거주자가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나. FATCA 비참여금융회사 다. 실질적 지배자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거주자이고 대한민국 거주자가 아닌 수동적 비금융외국단체 8. 제 7호의 정책 및 절차는 제 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금융계좌를 소유한다고 확인될 경우, 그 계좌를 보고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보고(미국 국세청 웹사이트의 관련 등록요건을 따르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정하고 있을 것 9.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일 경우,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 FATCA 참여금융회사, 이행간주 금융회사 또는 적용면제 실질 소유자일 것
--	--	--